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YDP미래평생학습관의 공간을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 절차와 사용료의 부과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생학습관 이용 및 시설 사용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제25조) 및 관련 별표·서식 정비(별표1~5, 서식1~5호)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및 책무성 제고(안 제7조,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YDP미래평생학습관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등 운영 사항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체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부터 안 제25조까지 평생학습관 이용 및 시설 사용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안 정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검토 결과

- YDP미래평생학습관(도신로4길 20)은 우리 구(區)의 평생학습 거점으로써 개인의 일상 학습을 지원하고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시설로써,
- 공공기관 및 평생학습동아리에 한정된 대관 대상을 교육청,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 유관 기관은 물론 지역 모임 및 구민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유휴 공간에 대해서 공익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하는 계획(YDP미래평생학습관 대관 운영계획, 미래교육과-4937(2025.4.11.))을 수립한 바 있음.
- 이를 위하여 안 제20조에서부터 안 제25조까지 시설 훼손 및 질서 유지, 안전한 학습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 제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설 사용 기준 및 사용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서도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평생학습관 이용 및 시설 사용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은 상위법에 근거 있어 적법한 입법 행위임.
- 아울러 안 제20조의 이용 제한 사유, 안 제22조의 시설 사용의 제한 사유, 안 제23조의 시설 사용의 취소 사유 등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여 공공시설의 위험 방지, 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구 담당 국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의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였으며 이는 구청·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겨지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640호
----------	-------

제출연월일: 2025. 11. .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평생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YDP미래평생학습관의 공간을 구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 절차와 사용료의 부과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생학습관 이용 및 시설 사용 관련 규정 신설(안 제20조~제25조)
및 관련 별표·서식 정비(별표1~5, 서식1~5호)
- 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및 책무성 제고(안 제7조, 제9조)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위원회 검토: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5. 10. 2.~10. 22./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을 “**구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4조의3 전단 중 “**작성 · 관리하여야**”를 “**작성 · 관리하여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 · 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을 “**구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이용자가**”를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로 한다.

제5조 중 “**협의 · 조정하기하기**”를 “**협의 · 조정하기**”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은 의장이 위촉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을 “**사무 처리를 위해**”로, “**부서장으로 한다**”를 “**부서장을 간사로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

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학계, 지역 내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자

다.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계 기관
·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⑤ 협의회는 필요시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촉을 원할”을 “사임 의사를 표시한”으로 한다.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7조의 제목 “(수강료의 징수 등)”을 “(수강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을”을 “수강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수강료는 수의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 “(수강료의 반환)”을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각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평생학습관 이용 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
-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 시설 내에서 음주, 소란, 고성 등 수업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질서 유지, 시설 보호 및 다른 이용자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3조는 삭제한다.

제21조(시설 사용 신청)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

2. 구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

3.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구성원의 과반수가 구민인 경우

4.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물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료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22조(시설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2. 영리 목적 등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3조(시설 사용의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용 목적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내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 또는 사용자의 단순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③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영등포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25조(수입금 징수 처리)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사용료 등 수입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세외수입 규정에 따른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부터 별표 5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기준(제17조 관련)

운영과정	수 강 료 (프로그램당)	비 고
13주 이상	100,000원 이하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주1회 2시간○ 회당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과정은 기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9주~12주	60,000원 이하	
8주 이하	20,000원 이하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별표2]

수강료 감면 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비율	대 상
	면 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수강료	50%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구비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강료 감면신청서, 신분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에 따른 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강좌 수강료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모집 정원 미달 또는 강사 및 학습장소 등 그 밖에 사유	가. 모집정원 미달 또는 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나. 프로그램을 개설 후, 학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일할 계산한 수강료 금액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전까지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나.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2) 수업시작 이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반환하지 아니함 이미 낸 수강료 전액 환불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 대상 수강료(1개월 이내 기준 적용)와 나머지 기간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2. 학습자 본인의 요청		

[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
2. 총수업시간: 수강료 징수기간 동안의 총 수업 시간
3. 반환금액의 산정: 반환신청을 한 날까지 경과된 총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회차 단위 구성 수업: 경과한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별표4]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제21조 관련)

시설명	구 분	공간명	면적	사용료 (1회당)
YDP미래 평생학습관	소강의실	함께나눔실1,2	40.5m ²	20,000원
		함께배움실1,2	45m ²	
	중강의실	함께배움실3,4	90m ²	30,000원
		창의랩		
	대강의실	미래랩	121.5m ²	40,000원
		미래홀		
	대 강당	YDP홀	424.8m ²	140,000원

[비고]

- ①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시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加산됩니다.
-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별표5]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2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0조3의제1항제1호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사용 개시 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 개시 후	이미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사용료 전액
2. 제20조3의제1항제2호 (공공질서 저해, 시설물 훼손, 허위 신청 등)	사용 개시 전/후	반환하지 않음
3. 제20조의3 제2항 (사용자의 단순 취소)	사용개시일 5일 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개시일 3일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사용개시일 1일 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금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않음

[비고]

-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하여 반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강료 감면신청서							
수 강 명	강좌명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수 강 료	금 원 (₩)						
감면률(금액)	% [금 원 (₩)]						
감면수강료	금 원 (₩)						
감면사유	면제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노인 등)					
※ 해당항목에 ▣ 해주세요	50%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증빙이 가능한 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수강료를 전액 입금한 경우에만 “계좌입금계좌”를 기재해주세요!							
감면수강료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p> <p>1. 수집 · 이용 목적 : 평생교육 운영 및 관리</p> <p>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집(또는 직장) 전화번호 등</p> <p>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을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폐기합니다.(보유기간 : 1년)</p> <p>※ 신청인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td> <td style="width: 33%;">성 명 :</td> <td style="width: 33%;">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td> </tr> </table>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성 명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성 명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강좌명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수강료	금	원 (₩)		
수강기간				
반환 수강료	금	원 (₩)		
입금통장	거래 은행		예금주명	
	계좌 번호			
반환사유			반환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수집·이용 목적 : 평생교육 운영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집(또는 직장)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을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보유기간 : 1년)
- ※ 신청인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성명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YDP미래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성명)	(대표자명:)		
	주 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참여인원	명	E-mail	
시설이용	이용시설	<input type="checkbox"/> YDP홀 <input type="checkbox"/> 미래홀 <input type="checkbox"/> 창의랩 <input type="checkbox"/> 미래학습랩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1)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2)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3)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4) <input type="checkbox"/> 함께나눔실(1) <input type="checkbox"/> 함께나눔실(2)		
	부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빔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TV <input type="checkbox"/> 음향(마이크)		
사용기간	사용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시간	:	~	(시간)
사용목적	행사 주요내용			
첨부	1. 행사계획서(사본가능), 서약서 각1부 2. 그 밖의 입증서류 등			

공공기관이나 등록된 평생교육동아리가 아닌 일반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체는 영등포구민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모임 / 단체 / 기타)임을 확인합니다. (해당 미해당)

※ 신청 전 구성원 현황을 확인해주시고, 해당 사항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성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집(또는 직장)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보유기간 : 1년)
- ※ 신청인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성명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YDP미래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통지서

사용자	단체명(성명)	(대표자명:)		
	주 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참여인원	명	E-mail	
사용시설	이용시설	<input type="checkbox"/> YDP홀 <input type="checkbox"/> 미래홀 <input type="checkbox"/> 창의랩 <input type="checkbox"/> 미래학습랩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1)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2)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3)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4) <input type="checkbox"/> 함께나눔실(1) <input type="checkbox"/> 함께나눔실(2)		
	부대시설	<input type="checkbox"/> 빔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TV <input type="checkbox"/> 음향(마이크)		
사용기간	사용일시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사용시간	:	~	(시간)
사용목적	행사 주요내용			
사용료	일금	원(금)	원	
승인조건	1. 사용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별지 제4호 서식 뒷면]의 시설사용 승인조건을 위배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사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변경(취소)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일 이후에 변경(취소) 신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집(또는 직장)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을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보유기간 : 1년)
- ※ 신청인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성명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YDP미래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승인조건

1.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시설 사용에 관한 허가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쓰레기봉투 제공, 청소 용역업체 위탁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평생학습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평생학습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가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본 평생학습관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과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본 평생학습관에 어떠한 손해 배상도 요구할 수 없으니 사전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시작일 7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 시작일에 임박하여 사용허가된 후 취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8. 재난대피시설 지정 및 선거사무 등 피치못할 사유 발생으로 대관 예약내역 변경 및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다음의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특정 정치 목적이나 종교적 행사를 위한 경우
 - 나. 영리 목적 등 공익성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다. 사용 목적이나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라. 사용자가 사전 승인받은 행사 내용이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마.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바. 현행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협하는 경우
 - 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 행사안내문, 현수막, 선전물 등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해야 합니다.
11. 사용 후 시설 및 물품의 파손, 사후처리 미흡, 행사목적 이탈 등의 경우에는 향후 시설 사용은 불허합니다.(시설 대관 시 음식물 반입 및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2. YDP미래평생학습관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및 인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YDP미래평생학습관 사용료 반환 신청

신청자	단체명(성명)	(전화번호:)		
	주 소			
사용시설	이 용 시 설	<input type="checkbox"/> YDP홀 <input type="checkbox"/> 미래홀 <input type="checkbox"/> 창의랩 <input type="checkbox"/> 미래학습랩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1)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2)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3) <input type="checkbox"/> 함께배움실(4) <input type="checkbox"/> 함께나눔실(1) <input type="checkbox"/> 함께나눔실(2)		
	부 대 시 설	<input type="checkbox"/> 빔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TV <input type="checkbox"/> 음향(마이크)		
사용기간	사 용 일 시	20	년	월
	사 용 시 간	:	~	:
사용목적	행 사			
	주 요 내 용			
반환금액	일금	원(금)	원)	
반환사유			반환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성 명 : (서명,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집(또는 직장)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보유기간 : 1년)
- ※ 신청인은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성 명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u>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③ · ④ (생 략)</p>	<p>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구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u>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자</p> <p>3. (생 략)</p> <p>③ (생 략)</p>	<p>제4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p> <p>----- -----</p>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p> <p>구청장은 이용권 발급 대장을 <u>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p>	<p>제4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p> <p>----- ----- <u>작성·관리하여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 <후단 삭제></u></p>

제4조의4(이용권의 이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생략)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의4(이용권의 이용 등) ① -----
----- 구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이 -----

2.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 -----

----- 협의·조정하기 -----

-----.

제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은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구 평생교육담당 소관 국장

3. 구와 관할 지역교육청의 평생
교육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
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
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
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신 설〉

1. 당연직 위원

가. 구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

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
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학계, 지역 내 평생교육 또
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가, 평생교육기관의 대표자

다.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자로서 관계 기관·단체
의 추천을 받은 자

〈삭 제〉

〈삭 제〉

④ ----- 사무 처리를 위해 -----
----- 부서장
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시 관련 업무

제9조(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생략)

제17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개발·운영하는 강좌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또는 이용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익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수행에 필요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해촉) -----

-----.

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사임 의사를 표시한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수강료) ① -----

----- 수강료를 -----
-----.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삭 제〉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강료 및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18조(수강료 등의 면제) 구청장은 별표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수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 (생 약)

<신 설>

<삭 제>

<삭 제>

제18조(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각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현행 제19조의2와 같음)

제20조(평생학습관 이용 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
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
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
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
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소란, 고성
등 수업 및 시설 운영에 지장
을 주는 경우
4.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질서
유지, 시설 보호 및 다른 이용
자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신 설>

제21조(시설 사용 신청) ① 구청장
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관내 평생교육기
관
2. 구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
3.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
로서, 구성원의 과반수가 구민
인 경우

4.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 인 및 단체

-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신
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을 받은 경우, 시설물 사용 여부
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통
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
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료 부담
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식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신 설>

제22조(시설 사용의 제한)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시
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
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
한 경우
2. 영리 목적 등 공익성을 위배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3.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

<신 설>

제23조(시설 사용의 취소 및 사용
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인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
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
게 된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물
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용 목적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내용 또는 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소 또는
사용자의 단순 취소에 따른 사용
료 반환은 별표 5에 따른다. 다
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하지 않는다.

③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신 설>

- 제20조(문자해득교육 실시 등) (생
략)
제21조(협력 및 협조 등) ① (생
략)
② (생 략)
제22조(지도 · 감독) (생 략)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
제한다.
1. 영등포구가 주최하거나 주관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민의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
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진
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
사

<신 설>

- 제25조(수입금 징수 처리) 이 조례
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사용료
등 수입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세외수입 규정에 따른다.

- 제26조(문자해득교육 실시 등) (현
행과 같음)
제27조(협력 및 협조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도 · 감독) (현행과 같음)

<삭 제>